



2012 세금절약 가이드 I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Happy Tax!
Happy Together!**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모았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2

세금절약 가이드 I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Happy Tax!
Happy Together!**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모았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말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고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목표로 공정세정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에는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국세청’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하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운영하여 고의·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세정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최신 세무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기에 제공하고, 모든 국세관련 상담을 위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통 재래시장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세금정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자칫 모르고 지나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한데 모은 ‘세금절약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확대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보강하는 등 내용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4월

국세청장 이 현동

Contents

제 1 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
-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6
-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
-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2
-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5
-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2
-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4
-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37
-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0
-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47
-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0

제 2 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56
-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60
-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63
-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67
-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69
- 06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71

- 0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3
- 0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76
- 09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79
- 10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3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88

매출관련

-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
-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3
- 0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96
-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8
-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99

세금계산서 관련

-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101
- 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3
-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105
-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107
-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09

• Contents

-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1
-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 발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14

세액공제 관련

-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8
-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19
-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22
-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6/106 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5
-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7
-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130

기타

-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133
-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35
-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137
-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 140
-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143
-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146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149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52

제 4 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156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158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1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165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168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170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172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175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178

10 각종 총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180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82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185

13 기부금 소득공제 188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190

• Contents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192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195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202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204
19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206

부동산임대업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09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212
22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214

이자소득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216
24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218
25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20
26	금융소득 종합과세	222

근로소득

27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27
28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32
29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235

기타소득

- 30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37
- 31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240

원천징수

- 32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242
- 33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45
- 34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48

제 5 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01 중소기업이란? 252
-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58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012
세금절약가이드 I

1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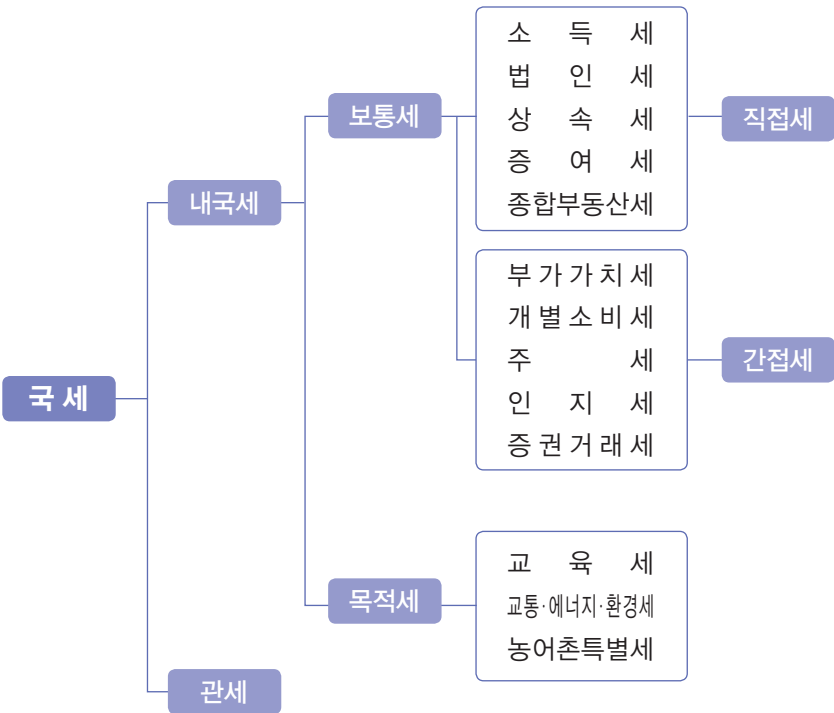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국방·치안·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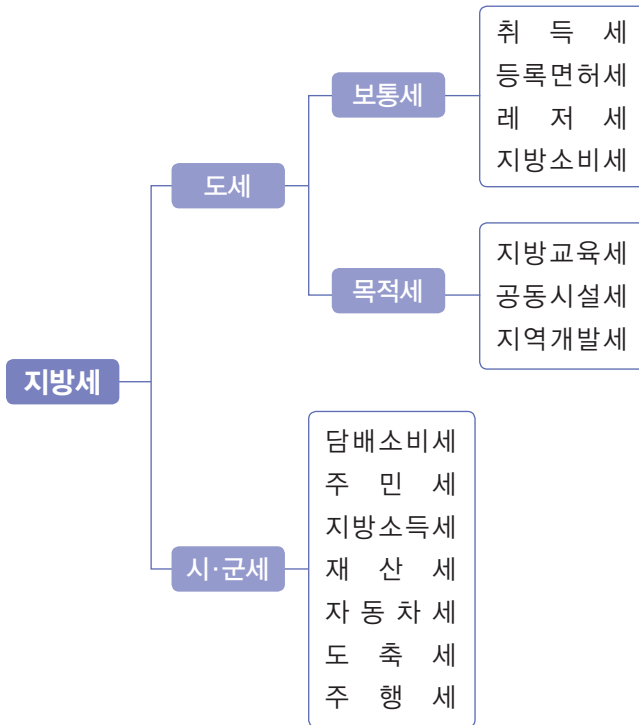
Guide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도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세의 구조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이다.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하여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uide

절세, 탈세, 조세회피

- ▶ 절 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 탈 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 조세회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범칙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 국세청 법규과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02)397-7534~6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반드시 특정서식(‘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 (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



●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접수 (우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86번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부동산거래관리과(양도), 재산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국세조사관이 다음과 같이 세무상담에 응하고 있다.

◆ 전화상담(126번 세미라콜센터를 통해 연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세법상담)을 선택하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상세하고 정확한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화요금은 시내 통화요금이 적용된다.

◆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서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활용하거나 「인터넷질문하기」를 클릭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방문상담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방문상담실(1층)

●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 전화 126 번을 설치하여 2010년 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화가 연결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세법상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탈세 등 각종제보, 연말정산간소화, 학자금 상환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지방 거주 납세자의 경우, 126 번 이용 시 모두 시내요금이 적용되어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접속번호(통신사고유번호) + 국가코드(82) + 126

ex)미국 : 011 + 82 + 126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 해당 시청·군청·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직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직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한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5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3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1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기결정신청제도(早期決定申請制度)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납세자 선택에 의거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음

※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불복심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였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Guide

각하(却下), 심리자료 사전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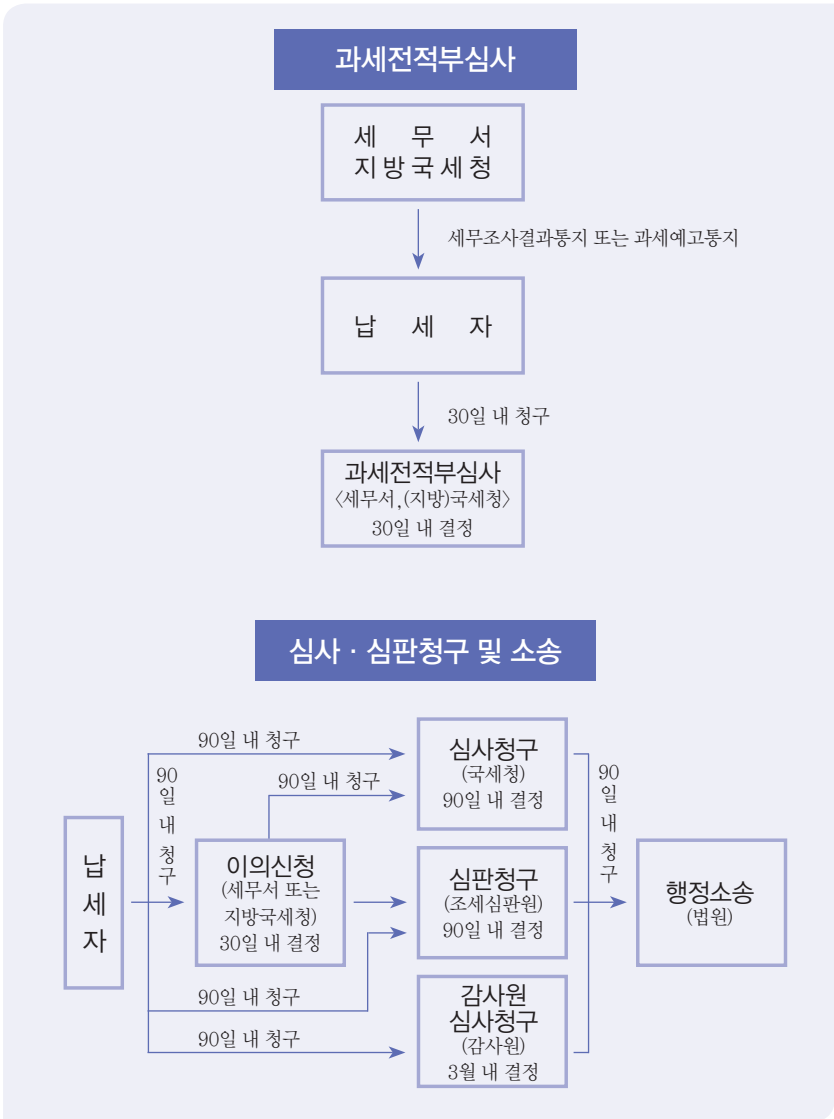
▶ 각하(却下)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을 심리해 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 심리자료 사전열람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심사청구 결정절차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7조의 4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 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0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까? 등이 궁금했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채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양부도 씨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부도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0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⑥ 국세확정정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역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서울특별시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2,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2,2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1,900만원 이하
기타지역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1,400만원 이하

※ 2010년 7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

※ 과밀억제권역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지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참조

※ 광역시 :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 기타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역

◆ 상가 임차보증금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서울특별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1,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1,35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900만원 이하
기타지역	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750만원 이하

※ 2010년 7월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3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⑧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다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 체납, 3년간 결손 500만원 이상 제외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 ⑤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 징수유예 취소사유

-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담보의 변경 및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③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④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2
 국제징수법 제15조,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2012
세금절약가이드 I

2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 세법상 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0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6조,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 제78조

0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 ① 광업
-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음식점, 백화점, 볼링장 등
-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국세청고시」 코너 참조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국세청고시 제2011-31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0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7호,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0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나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09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1,363,636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제9항

06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9년 3월 계약 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대로 2009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발급받았다.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 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Guide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제9항

0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국세청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 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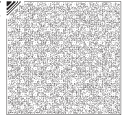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0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Guide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된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09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중소기업 판정기준 등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참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광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text{감면세액}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50\%$$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1) 취득세 면제

-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2)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와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3)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분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와 창업 중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1년 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세 면제	-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인지세 면제	- 창업 후 2년 내 금융회사의 용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재산세	-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10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역	환산 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 100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	1,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4,500만원 이하	1,35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3,000만원 이하	900만원까지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 100

◆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9%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5% 이내로 제한된다.

● 임대인의 권리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9%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7조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2012
세금절약가이드 I

3



0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잘 이해한 후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매출세액 (-)	=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	<p>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p> <p>(+) 기타공제 매입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제출분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p>(-)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대손처분받은 세액
경감·공제세액 (+)	<p>▶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p> <p>▶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p>
가 산 세 (=)	
납부할 세액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매출세액 (-)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총공급가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가 산 세 (=)	
납부할 세액	

0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0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 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04

봉사로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몹싸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천 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했다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고시 제2009-52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0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0.5%(기본법 47의 3①단서)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64조 제3항

0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 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은 같이 계산한다.

$$\text{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면세공급가액}}{\text{총 공급가액}}$$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0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2조 제2항, 제5항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세로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이세로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 ※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 126-내선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 ※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 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의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83조

0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이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Guide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 유형·휴폐업」
- ②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이사들 씨의 201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100 %	3,000,000	900,000
50 %	1,500,000	450,000
0 %	0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0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써,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0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0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Guide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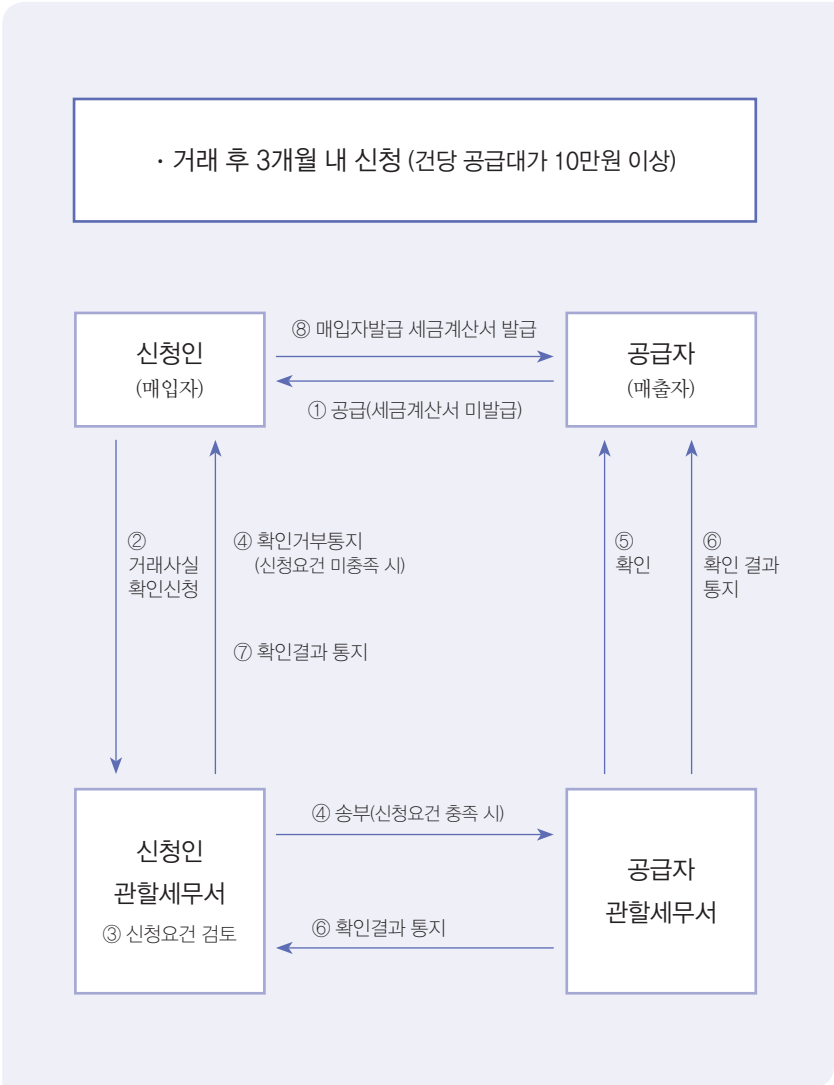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4



●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80조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4조의 5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이다.

-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세액계산 방법

- 재고품

$$\text{재고매입세액} = \text{재고금액} \times \frac{10}{110} \times \left(1 - \frac{\text{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text{업종별부가가치율}} \right)$$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2년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3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0%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6/106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차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 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 조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10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써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홍 씨는 201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홍 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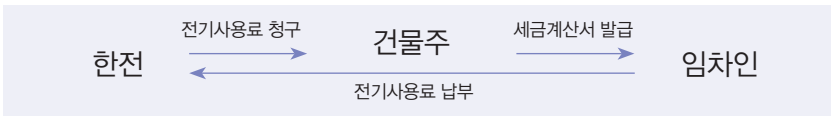
-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③ 주민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주민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영 사장은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25일까지 납부한 다음, 월 말에는 물품대금 5천만원을 결제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천만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원만 환급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하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제3항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10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 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경우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원재료를 대량 매입하여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매입금액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위 이영세 씨의 경우에는 1, 2월분 거래분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받는 경우에 비해 4개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 거짓세금계산서 관리

‘거짓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 A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거짓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루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탈루세액	추징세액	탈루세액	추징세액
계	4,500	6,992	2,000	8,501
부가가치세	1,000	1,709	1,000	1,709
법인세	-	-	1,000	1,509
소득세	3,500	5,283	-	5,283
조세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기 타	세무조사 실시			

※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에 고지하는 것으로 계산함



이와 같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경감

◆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1.3%를 연간 500만원(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한다)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전화망을 사용)에 대하여 건별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 ① 소매업
-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 ③ 숙박업
- ④ 목욕·이발·미용업
- ⑤ 여객운송업
-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 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i)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 ii)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iii) 주거용 건물공급업
 - iv)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v) 부동산중개업
 - vi)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vii) 가사서비스업
 - viii)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ix) 위 i) 내지 viii) 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x)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x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xii)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xiii)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xiv)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 xv)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경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천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text{무신고가산세} = \text{부당무신고납부세액} \times 40\% + \text{일반무신고납부세액} \times 20\%$$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0년 제1기 사업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원
-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일 × 3/10,000 = 45,000 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 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 (7천만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80일 × 3/10,000 = 162,000 원
- 총 부담세액 = 5,462,000 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Guide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얽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 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3)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불성실가산세} = \text{무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times \text{경과일수} \times 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

종전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빨리 내든 고지서를 받고 내든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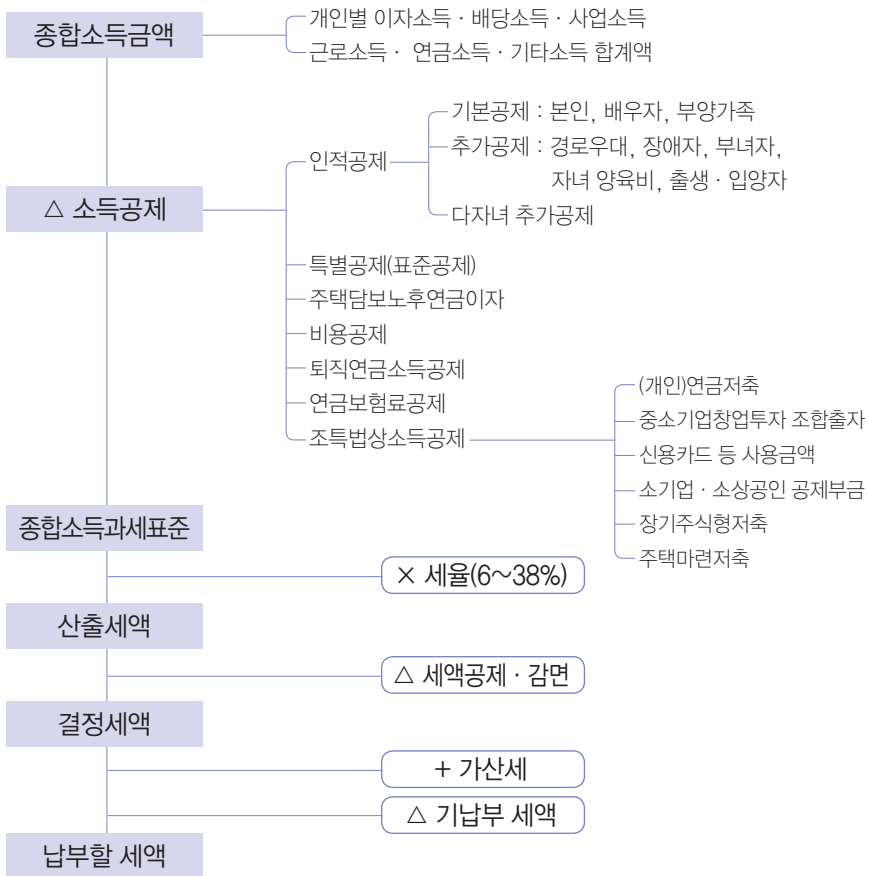
2012
세금절약가이드 I

4



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아니나 이를 알고 있으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위와 같이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연중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 소득도 있어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렇다.

◆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6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따라서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나 6백만원 및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나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소득 발생 즉시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0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5,355천원, 乙은 2,355천원, 丙은 855천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 2010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615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05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Guide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0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조차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Guide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목 및 '다'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Guide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측량사업, 손해 사정인업, 관세사업, 감정평가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기술) 지도사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건축사업 등
-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208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0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국세청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 간편장부 양식

일자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		고정자산 증감(매매)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0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9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0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 5백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0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제8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49조의2

0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과세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과세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제160조의 2

0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begin{aligned}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quad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end{aligned}$$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구분	귀속연도 기준수입금액	2012년 귀속	2011년 귀속
		2011년	2010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6,0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3,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2,400만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2년 5월(2011년 귀속) 신고 시 2010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

- 1) 매입비용 :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 된다.
-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의2
국세청 고시 제 2009-11호

0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 하겠다고 한다.

이원단 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가징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당 거래를 주요경비로 반영한 기준경비율 신고자 포함)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 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 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0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하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매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 하라. 그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10

각종 총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총당금’이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연도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총당금이라 한다.

총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총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감가상각총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반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6조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징수하였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 ②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Guide

특수관계자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친족
2.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해당 거주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해당 거주자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7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총 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 마.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이 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즉,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인 경우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9항,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의2

13 기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다.

●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 ※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전체 기부금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구 분	종 류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정치자금 기부금* 등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법정기부금 공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구 분	종 류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0%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30%
지정기부금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10%) + (㉠, ㉡ 중 min)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3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증빙서류 제출

-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및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76조, 제88조의4 제13항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 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나재해 씨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 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조)
-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 조의 2)
-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8 조의 3)
- ④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조)
- 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 조)
- ⑥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12 조 2항)
- ⑦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 조)
- ⑧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 조)
- 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 조의 2)
- ⑩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 조의 3)
- ⑪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 조의 4)
- ⑫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조)
- 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 조의 2)
- ⑭ 고용중대 특별세액공제(30 조의 4)
- ⑮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 조)
- ⑯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104 조의 5)
- 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 조의 8)
- ⑱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 조의 14)
- ⑲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 조의 15)
- ⑳ 대학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 조의 18)
- ㉑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 조의 22)
- ㉒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 5584 호 12 조 2항)

Guide

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써,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 조, 제132 조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본다.

$$\text{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text{산출세액} \times (\text{일반무신고 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 \text{원천징수된세액}] \times 20\%$$

$$\text{② 부당무신고가산세} = [\text{산출세액} \times (\text{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 \text{원천징수된세액}] \times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times 0.07\%$ (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①+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한다.

$$\textcircled{1} \text{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text{산출세액} \times (\text{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 \text{원천징수된세액}] \times 10\%$$

$$\textcircled{2} \text{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text{산출세액} \times (\text{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 \text{원천징수된세액}] \times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times 0.14%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textcircled{1} \text{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 \text{일반초과환급세액} \times 10\%$$

$$\textcircled{2} \text{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 \text{부당초과환급세액} \times 4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textcircled{1} \text{ 납부불성실가산세} = \text{무납부(과소납부)세액} \times 0.03\% \times \text{경과일수}$$

$$\textcircled{2} \text{ 환급불성실가산세} = \text{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times 0.03\% \times \text{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 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분명 금액 × 2%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2.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불분명가산세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 계산서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②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③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 수취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 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 증빙불비 가산세 = 정규증명서류 미수령금액 × 2%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한다.

☞ 무기록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록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록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

- ① 미납기간 1일 당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② 미납부금액의 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한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미달 수입금액) × 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의 0.5%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의 0.1%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한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빨리 가입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한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47조의 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제1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부터 147조의 5까지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65조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본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릴 데도 없다.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내일로 다가온 납부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 분할납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할납부’라고 한다.

◆ 분할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세액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예를 들어, 2011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분할납부신청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분할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다음해 1월 초에 보내주는 분할납부분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19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강대범 씨는 사업규모가 점차 커져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38%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 서울구조(2012년 귀속)

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200억원 초과	22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하다.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 **세무조사**

요즈음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 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임대업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과세를 받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추계과세를 받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과세를 받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무겁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임대업 씨의 임대현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차이를 비교해 보자.

- 임대기간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월세수입 5,000,000 원 • 월 관리비수입 1,000,000 원
- 임대보증금 5억원 • 상가취득가액(건물분) 2억원

- 건물기준시가 5천만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7%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18,500,000 원
- 인건비 등 필요경비 합계액 30,000,000 원(주요경비 1,500 만원)
- 가족상황 처와 자녀 2명 • 기준경비율 22.2%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귀속연도	2007년 7월 ~ 2008년 12월	2009년 1월 ~ 2009년 12월	2010년 1월 ~ 2010년 12월	2011년 1월 ~ 2011년 12월	2012년
이자율	5 %	3.4 %	4.3 %	3.7 %	4.0 %

●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수입 = 5,000,000 × 12월 = 60,000,000 원
- 관리비수입 = 1,000,000 × 12월 = 12,000,000 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5억원 - 2억원) × 3.7% - 18,500,000 원 = 0

$$\therefore \text{총 수입금액} = 60,000,000 \text{ 원} + 12,000,000 \text{ 원} + 0 \text{ 원} \\ = 72,000,000 \text{ 원}$$

▷ 소득금액 = 72,000,000 원 - 30,000,000 원 (필요경비 합계액)
= 42,000,000 원

▷ 과세표준 = 42,000,000 원 - 7,100,000 원 (소득공제)
= 34,900,000 원

▷ 소득세액 = 4,155,000 원



●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수입 = 5,000,000 × 12월 = 60,000,000 원

• 관리비수입 = 1,000,000 × 12월 = 12,000,000 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5억원 × 3.7% = 18,500,000 원

∴ 총 수입금액 = 60,000,000 원 + 12,000,000 원 + 18,500,000 원
= 90,500,000 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90,500,000 - 15,000,000 - (90,500,000 × 22.2%)
= 55,409,000 원

▷ 과세표준 = 55,409,000 원 - 7,100,000 원 (소득공제)
= 48,309,000 원

▷ 소득세액 = 7,648,992 원
(소득공제 710만원,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기장을 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기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 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고가주택’ 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22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 상가 분할을 통한 절세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 씨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시가 5억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아내(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재산 씨 부부는 총 5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4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 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동팔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중간에 나누어 받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를 받는 해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조동팔 씨의 2011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 - 7,100,000) \times 15\% - 1,080,000$
= 5,355,000 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 원 ($30,000,000 \times 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 원
- 총 부담세액 : 17,955,000 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 + 50,000,000 - 7,100,000) \times 35\%$
- 14,900,000 = 17,615,000 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 원 ($40,000,000 \times 14\%$)
- 총 부담세액 : 23,215,000 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526만원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24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 가족인 경우 약 2,32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하여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은 약 1,78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06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25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

25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 씨로서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 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

● 분리과세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 된다.

● 주의할 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를 받을 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류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상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배당(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농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으로 1명당 1,200만원 이하
-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이자·배당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으로 1명당 5,000만원 이하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배당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 소득으로 투자신탁 별로 투자금액 1억원 이하의 금액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투자신탁별로 투자금액 1억원 이하의 금액
-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이자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2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농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초과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5%)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 (5% 또는 14%)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배당 (5% 또는 14%)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 (5% 또는 14%)
 -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배당 (5%)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으로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 (14%)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투자 신탁별로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5%)
 -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으로 투자신탁별로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 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혹시라도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소득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등’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포인트카드,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해 준다.

$$\text{공제금액} = \text{①} + \text{②} + \text{③}$$

총 급여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20% = ①
25% 초과분	[직불카드, 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30% = ②
	[전통시장 사용분] × 30% = ③

※ 총 급여액 25% 추가분은 ① → ② → ③ 순서로 채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전통시장분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로,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및 리스료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부가가치세 면제부분)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영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금

● 소득공제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핸드폰 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카드·핸드폰 변경」에서 별도 변경·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성형외과 등 병의원, 일반고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와 세미래 콜센터 ARS(국번없이 126-2 현금영수증 상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 영수증의 거래 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해당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금액의 20%(건당 한도 300만원, 연간 1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미 발급한 사업자는 과태료(미발급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2012년 2월 2일 거래분 부터)이내 서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거래 확인제도(주택월세 포함)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증명을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고 시 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지급한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후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발급거부금액의 20%(최고 50만원, 최소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발급 거부금액의 5%)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와 각종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2012년 2월 2일 거래분 부터)이내 서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28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 A. 김판매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원의 급여 중 15만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학자금 300만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위 두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사례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 입강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150만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29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정신고기간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2) 청구요건

-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4)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30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 만원이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

$$\text{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text{만원} - (1,500\text{만원} \times 80\%)$$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 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31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③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④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⑥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 ⑦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⑧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2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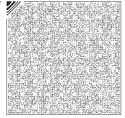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100만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① 상금·현상금·포상금 등
- ②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③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④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 ⑤ 저작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
- ⑥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⑫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⑭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⑮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⑯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⑰ 사례금
- 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⑲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⑮~⑰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
 -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⑳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㉑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㉒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㉓ 뇌물
- ㉔ 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㉕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3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급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텔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텔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인적용역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④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⑥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⑨ 교정·번역·고증·속기·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⑪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⑫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⑬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34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룸싸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종전에는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실상 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싸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원천징수 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012
세금절약가이드 I

5



0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 ①)

1)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보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 노인 복지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이어야 한다.

3)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다.

3) 자기자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개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4)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5)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6)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7) 중소기업의 적용유예 [유예기간의 적용(조특령 § 2 ②)]

◆ 유예 적용 대상

-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8)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의 범위)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분류부호	규모기준
① 해당 업종	• 모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2 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콘서트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 7조제 1항제 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 5 조 제 6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 5 조 제 8 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 54 조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형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 유형음식점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 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사업,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숙박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수	
②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 건설: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 도매: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③ 독립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및 간접소유한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관계기업 기준 적용하여 중소기업 요건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및 간접소유(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한 최대 출자자인 기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관계기업 기준 적용하여 졸업기준 충족
④ 졸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천 5백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적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연도과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유발생사업연도과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그 후에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 ① ② ③ ④ 요건 모두 충족 시 중소기업 해당

0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 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4년간 50% 세액감면(법§ 6)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 ~ 30% 특별세액감면(법§ 7)
 -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법§ 7의2)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시 4년간 50% 세액감면(법§ 33의2)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법§ 63)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법§ 5)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법§ 5의2)
-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법§ 130)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법§ 132)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법인세법§ 72, 소득세법§ 85의2)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법인세법§ 25, 소득세법§ 35)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 31)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익금불산입(법§ 8)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소득세법령 § 186, 법인세법령 § 115)
 - 분할납부기한 우대(법인세법§ 64)
 - 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12)
- 고용유지·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유지시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법§ 30의3)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증가액의 50~100% 세액공제(법§ 30의4)

※ ‘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준다.

• 감면대상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용양기관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감면내용

구 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 10% - 상기업종 외 20%	- 도·소매, 의료업 10% - 상기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 사업, 연구개발업 등)	- 도·소매, 의료업 5% - 상기업종 외 15%

※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 지원대상 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

- 제조업은 100명 미만
- 축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여객운송업, 출판업은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 2009년 2월 4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2)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 대상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외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 일반기업이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 포함

• 세액공제의 계산 : ① + ②

$$\textcircled{1} \left[\begin{array}{l} 30\text{일 내 결제한 기업구매} \\ \text{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text{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end{array} \right] \times 5(4) / 1,000$$

$$\textcircled{2} \left[\begin{array}{l} 30\text{일 초과 60일 내} \\ \text{결제한 기업구매} \\ \text{전용카드 등의 사용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구매대금지급을 위해} \\ \text{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end{array} \right] \times 15 / 10,000$$

금액 (① 차감후 잔액)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3) 지방이전 시 10년(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6년(낙후지역은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3년(낙후지역은 2년)간 50%를 감면한다.

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 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다.

- 설비 종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자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설비,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도 대체투자한 경우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다.

• **최저한세란**

-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한다.

• **최저한세 적용을 우대**

- 일반법인에 비해 3% ~ 7% 포인트를 우대하고 있다.

일반기업		중소기업	
각종 감면 적용전 과세표준	× 10%~14%	각종 감면 적용전 과세표준	× 7%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의 최저한세율 적용

7)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결손금 소급공제란?**

-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한 기업

• 환급세액의 계산

$$\text{환급세액} = \frac{\text{직전연도 법인(소득)세액}}{\text{직전연도 과세표준} - \text{당해연도 결손금액}} \times \text{직전연도 법인(소득)세}$$

8)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 접대비 인정한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 인정한도 ①+②	-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수입금액 적용율(0.03%~0.2%)	② 수입금액 적용율(0.03%~0.2%)

9)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 세금지원내용

-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등기함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

10)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가면 해당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적용대상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 전환 후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해당 업종

• 세금지원내용

-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11)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설비에 대해 무상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증자와 특수관계 있는 중소기업 제외)

• 세금지원내용

- 무상으로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로 기증 받은 설비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12)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하다.

• 적용대상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준다.

13) 기타 주택법에서도 우선 지원하고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주택법시행규칙 별표8호)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14)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7%의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공제한다.

15)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세금지원 내용

- 중소기업은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 근로자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한다.(1,000만원 한도)

16)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 사회보험료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세금지원 내용

- 청년(15~29세, 군복무 감안 시 35세까지)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100%의 세액을 공제한다.

〈청년근로자 사회보험료 증가분 계산〉

$$\frac{\text{해당연도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사회보험료}}{\text{해당연도 신규고용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①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기존근로자를 교체하는 고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①의 값이 '0' 보다 작은 경우는 '0' 으로 계산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한다.

$$\frac{\text{해당연도 신규고용 청년외 근로자 사회보험료}}{\text{해당연도 신규고용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text{①}) \times 50\%$$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분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 하면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 ~ 0.5% 세액공제
사업전환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 ~ 7%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4%)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지원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 기증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장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 시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기술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밀 등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
 - 3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이 지방이전 시 최대 10년간 세금감면(법§ 63의2)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법§ 9)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11)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는 4년간 50% 세금감면(법§ 64)
-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7% 세액공제(법§ 24)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법§ 25)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25의2)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25의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25의4)
 - 시설투자를 고용증가와 연계 투자금액의 5~7% 세액공제(법§ 26)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법§ 12의2)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종업원 휴게실 등 투자금액의 7%(직장보육시설 등은 10%) 세액공제(법§ 94)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 시 1만원 ~ 300만원을 세액공제(법§ 104의5)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4년간 50% 세액감면(법§ 85의6)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만원 ~ 1,000만원(2012년 2월 2일 개정)을 세액공제(법§ 104의8)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 ~ 100%감면 (법§ 121의17)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해 위탁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법§ 104의14)

※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1)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이전 한 과세연도부터 7년(낙후지역은 5년)간 100%, 그 후 3년(낙후지역은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 다만, 공장시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에 한한다.

• 감면내용

-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6년(낙후지역은 4년)간 법인세의 100%, 그 다음 3년(낙후지역은 2년)간 50%를 감면한다.
 - ① 공장이전시 : 지방이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② 본사이전시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고정자산처분의 등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a)	$\frac{\text{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총액}}{\text{법인전체 근무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
(b)	$\frac{\text{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text{법인전체 근무인원}}$

㉔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시: ㉑ + ㉒ 의 합계액(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일반기업	중소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법§ 63)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세액감면(법§ 63의2 ㉔)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법§ 63의2 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이후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 분할 익금환입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수입금액의 3%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조특령 별표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

1.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
2.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다음 2년간 10%
3.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30%

〈일반기업〉

1.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 × 40%
2. 당해연도 발생액 × [3% + (연구개발비지출액 / 매출액) × 0.5]
(6%한도)
3.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

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 적용대상

- 농공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일반 산업단지,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 감면내용

-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 첨단기술설비
- ㉢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위 내지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투자금액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이 적용대상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인터넷이용)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②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채광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③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수지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 자재 및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④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의 투자금액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지원설비(공기조절설비, 수처리설비, 전력설비, 자동화관리 시스템),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 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

•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금액

• 감면내용

구분	세액공제율			비고
	일반기업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밖)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기본공제	3%	4%	4%	고용유지 조건 공제
추가공제	2%	2%	3%	고용증가 비례 공제
합계	5%	6%	7%	

• 추가공제 감면한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천만원
-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천5백만원
- 일반 고용인원(해당연도 근로자수 직전연도 근로자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 고용인원) × 1천만원

5)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은 세액감면을 받는다.

• 적용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첨단 기술기업 및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 감면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 감면한도(①+②)

- ① 투자누계액 × 50%
- ② MIN (특구 사업장 고용인원 × 1천만원, 투자누계액 × 20%)

6)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한다.

• 적용대상 시설

- 소비자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 기숙사,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직장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 감면내용

-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기숙사로써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10%)

※ 토지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7)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한다.

• 적용대상

-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을 제외)를 국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대리제출하는 세무사포함)

• 감면내용

- 지급명세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 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 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연2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 적용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사업장[(투자금액이 100억원(20억원,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개발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감면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안 사업장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한다.

※ 감면한도 (①+②)

① 투자누계액 × 50%

② MIN (특구 사업장 고용인원 × 1천만원, 투자누계액 × 20%)

9)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전체물류비의 50%(2012년부터 3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 전년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없거나 전체물류비의 50%(2012년부터 3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에서 전체 물류비의 50%(2012년부터 30%)를 차감한 금액의 3%
- ※ 법인세(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10) 사회공헌사업 세제지원

• 적용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 지원내용

-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 ※ 인정·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 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의 3% 한도) • 직전 4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은 10%)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 5~7%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정도 내 공제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명세서 제출 시 1만원~300만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정도 내 공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4년간 50% 감면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4년간 50% 감면

● 세금 감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 12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 130)
-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 132)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농특세법 § 3)

1)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련 규정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법 § 5, § 11, § 24, § 25, § 25의2 ~ § 25의4, § 26, § 94, § 104조의18② 동시적용 시 -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 § 26과 법 § 30의 4 동시적용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법 § 6, § 7, § 12의2, § 31④·⑤, § 32④, § 33의2, § 62④, § 63, § 63의2②, § 64, § 66~§ 68, § 85의6①·②, § 104의24①, § 121의8, § 121의9②, § 121의17②, § 121의 20②, § 121의21②, § 121의22②에 따른 감면과 - 법 § 5, § 8의3, § 11, § 24, § 25, § 25의2 ~ § 25의4, § 26, § 30의4, § 94, § 104의14, § 104의15, § 104의18②, § 104의22, § 104의25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적용 시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적용 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법 § 6, § 7, § 12의2, § 31④·⑤, § 32④, § 33의2, § 62④, § 63, § 63의2②, § 64, § 85의6①·②, § 104의24①, § 121의8, § 121의9②, § 121의17②, § 121의 20②, § 121의21②, § 121의 22②와 § 121의2 또는 § 121의4에 따른 감면 동시적용 시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법 § 120③, § 121, § 121의2, § 121의4, § 121의9③, § 121의17③, § 121의20③, § 121의21③ 동시적용 시
동일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일정 범위내 공제	- 법 § 5, § 11, § 24, § 25, § 25의 2~§ 25의4, § 26, § 30의 4, § 94, § 104의 14, § 104의15, § 104의18②을 적용할 때 § 121의2 또는 § 121의4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지분에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배제 유형	감면배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199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중설투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중 ①1·2호 - 법§ 11(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②3호 - 법§ 24(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①1·2호 - 법§ 25(제1항 제7호, 제9호 제외)
<p>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1②3호(신기술기업투자세액공제) - 법§ 24(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2호 - 법§ 25(제1항 제7호, 제9호 제외)

3)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 최저한세란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 최저한세 적용방법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함

- ①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의 14%,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백억 이하 10%,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7%
 -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② 각종 감면 후의 세액
 - ※ ②세액이 ①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세액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 후 세액
- 과세표준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세율]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 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 11)
-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 63·법§ 63의2·법§ 64)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8)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2의2)
- 고용유지 또는 중대 관련 세액공제 (법§ 30의3, 법§ 30의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4)

2012 세금절약 가이드 I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인쇄일 | 2012년 4월 **발행일** | 2012년 4월

발행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집필자 | 세정홍보과장 김창기 행정사무관 이정권 국세조사관 강은호
국세조사관 정광준 국세조사관 윤혜민 국세조사관 손상영
국세조사관 이계홍 국세조사관 유현인 국세조사관 최재현
국세조사관 석지학 국세조사관 이주연 국세조사관 김일환
국세조사관 김우영 국세조사관 박상훈 국세조사관 신성철
국세조사관 변유솔

디자인·인쇄·구입문의 | (주)일진커뮤니케이션 (02)2277-4424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국세청 **126** 세리켓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정가 : 3,000원**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전자책자로 다운로드(무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개정될 세법령 등을 동 전자책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稅美來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세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값 3,000원



9 772005 823007
ISSN 2005-8233

2012년 4월 국세청 세정홍보과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고객의 소리)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1번 선택 후 9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